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설명회

2018. 1. 4



- I.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
- II. 건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및 인원
- III. 건설업 외국인력 신청절차
- IV. 건설업 외국인력 업무대행
- V.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련 Q&A
- VI. 건설현장 외국인력 주의사항

I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



외국인력 도입규모

년 도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2018년(명)	54,000 (+ α = 2,000)	42,300	6,600	2,600	2,400	100
2017년(명)	54,000 (+ α = 2,000)	42,300	6,600	2,600	2,400	100
2016년(명)	56,000 (+ α = 2,000)	44,200	6,600	2,600	2,500	100
2015년(명)	53,100 (+ α = 1,900)	42,400	6,000	2,300	2,300	100
2014년(명)	53,000	42,250	6,000	2,300	2,350	100
2013년(명)	62,000	52,000	6,000	2,300	1,600	100
2012년(명)	57,000	49,000	4,500	1,750	1,600	150

외국인력 도입규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18년 일반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5만6천명 (신규45,000+재입국11,000)으로 결정

그 중 건설업 도입규모를 2,400명으로 결정 ($+\alpha$ = 탄력배분)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 계 (명)	56,000	54,000+ α (2,000)	42,300+ α_1	6,600+ α_2	2,600+ α_3	2,400+ α_4	100+ α_5
신 규	45,000	43,000+ α (2,000)	32,250+ α_1	5,870+ α_2	2,400+ α_3	2,390+ α_4	90+ α_5
재입국	11,000		10,050	730	200	10	10

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

시 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명)	$43,000+\alpha(2,000)$	$32,250+\alpha_1$	$5,870+\alpha_2$	$2,400+\alpha_3$	$2,390+\alpha_4$	$90+\alpha_5$
1월(1차)	$14,570+\alpha(1,200)$	$9,600+\alpha_1$	$2,610+\alpha_2$	$1,100+\alpha_3$	$1,220+\alpha_4$	$40+\alpha_5$
4월(2차)	$13,740+\alpha(800)$	$9,600+\alpha_1$	$2,610+\alpha_2$	$750+\alpha_3$	$730+\alpha_4$	$50+\alpha_5$
7월(3차)	7,540	6,550		550	440	
10월	7,150	6,500	650			

Ⅱ

건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및 인원



건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 건설업은 모든 건설공사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나,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아도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외국인고용 허용
- 건설업, 제조업 겸업하는 사업장은 주된 업종 하나로만 고용가능 (설치현장과 제작현장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 원도급 업체의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고용인원 산정

- 연평균 공사금액 : 총 공사금액 $\times \frac{12}{\text{총 공사기간(월)}}$

※ 단, 잔여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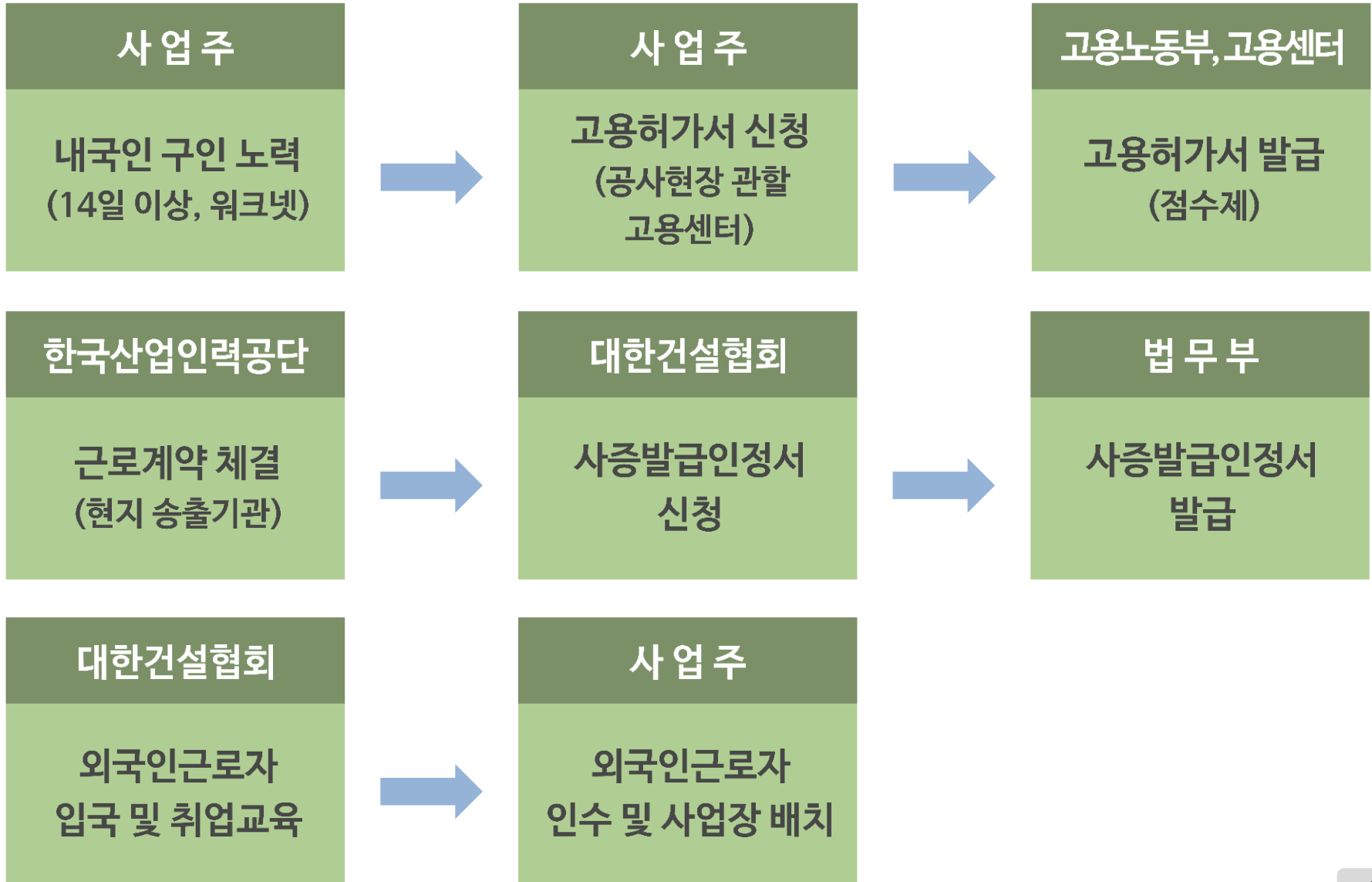
연평균 공사금액 (원도급자 총 공사금액기준)	고용 상한 인원 (신규고용계수 : 1억원당 0.3명)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 (신규 0.3)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 (신규 3명) ※ 계수 미적용

Ⅲ

건설업 외국인력 신청절차



외국인력 채용 과정



2018년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일정

2 차

4월 2일 ~ 16일

3 차

7월 2일 ~ 16일

1차
(예정)

1월 8일 ~ 22일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필수 (워크넷)

사업장 확정 : 1월 23일 ~ 2월 1일

사업장 안내 : 2월 2일

고용허가서 발급 : 2월 5일 ~ 2월 7일

[신청 서류]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건설업등록증

④ 원도급계약서

⑤ 하도급계약서

⑥ 외국인력현황표

※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이 기재된 원도급 계약서 혹은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에 해당될 것
- 고용 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 (공사 현장기준) 내국인 구인 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까지
- 임금 체불 사실이 없을 것
 - * 내국인 구인 신청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외국인력 배정 방식 등

● 외국인력 배정 방식

- 점수제 배정 (100점 만점)
- 가점 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가 다수일 경우, SOC사업장일 경우 등

● 건설업 특화국가 & 유효구직자

- 건설업 특화국가 :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 유효구직자 수 :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현지 국가별 한국어시험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직자명부에 등재

※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및 결과 확인 가능 (<http://eps.hrdkorea.or.kr>)

IV

건설업 외국인력 업무대행



대행업무 내용 및 비용

대행 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비고
필수	근로자 도입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취업교육	- 외국인 취업교육(건설업)	224,000원		
선택 (신규입국자 고용시)	각종 신청대행	-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이하 수령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31,000원 (입국 전)	61,000원	대한건설협회
		- 고용변동신고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외국인근로자업무상재해·사망신고 등 - 각종 정보 제공	30,000원 (입국 후, 3년)		
	편의제공	- 통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업무외질병및상해 수습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72,000원 (3년)		
총 비용(1인당)			417,000원		

사후관리 지원

- 최초 외국인력 도입 시 현장배치 통역 지원
- 현장 안전교육, 고충상담 통역 지원
- 전화통역, 번역 서비스 지원
-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체류관리 상담 지원
- 취업교육 시 외국인등록신청서, 채용등록 신상정보서 작성
-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서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 대행
(224,000원 중 1인당 10만원~15만원 내)

V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련 Q&A



Q & A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건설현장 한국인 근로자 인력부족 대체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노무비의 상대적 절감 효과
- 중국동포(H-2 방문취업) 근로자들은 도심지 근로를 희망하여, 산간·오지 현장에는 여전히 인력부족.
 - E-9 외국인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상기 현장에서 연속성 있는 근로 가능

Q & A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및 기능도는 어떠한가요?

- **한국어 능력** : 현지 한국어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합격한 인원이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므로, 기본적으로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간단한 대화가 가능
- **기능도** : 한국어 시험 합격 후 기능평가(건설기초기능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알선자 명부에 기재되므로 알선자 명부를 통하여 기능도 확인 가능
- **재입국 근로자들은** 한국어 능력 및 건설 기능도가 우수함

Q & A

현장이 종료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간 이동** : 현장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주 내 타현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장 간 이동은 외국인근로자가 이동하여, 근무할 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했던 공정이 끝난 경우 책임업체의 공정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타현장으로 이동이 가능

Q & A

기초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하는지?

- 외국인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입국 시 실시하는 2박3일 16시간 교육 중, 4시간의 건설안전보건교육이 포함

근로개시 전 고용센터 신고의무?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고용한 H-2 근로자들은 근로 시작 전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나, E-9 외국인근로자들은 별도의 근로개시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가입?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제도를 통하여 이미 가입하고 만기출국 시 퇴직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이기에, 일용근로자 고용시 회사가 가입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기간 만료 후 재입국제도?

- 외국인근로자가 재고용된 후 4년 10개월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 현지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여 원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사회보험 적용?

- 필수가입 : 건강보험, 산재보험
- 임의가입 : 고용보험
- 국가상호주의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 국가 : 태국, 스리랑카
 - 국민연금 미적용 국가 :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도입 기간?

- 고용허가서 발급 후 2~3개월 이내 입국 가능
 - 고용허가서 발급 후 현지 근로자와 계약체결 기간 : 2주 이내
 - 사증발급인정신청 ~ 사증발급 : 2주 이내
 - 사증발급 후 현지 사전교육, 비자발급, 입국 준비기간 : 4주
-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건설협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 E-7-4

- E-7-4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한국에서 E-9비자로 5년 이상 근로한 재입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간소득, 자격증, 학력, 나이,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한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서 분기별 100명의 쿼터로 운영됩니다.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 F-2-6

- F-2-6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 비자로 한국에서 4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업 한국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 또는 건설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2천만원 이상 자산보유, 3급이상의 한국어능력의 조건을 갖추면 비자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VI 건설현장 외국인력 주의사항



건설현장 외국인력 주의사항

●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국내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하여 건설업 불법고용에 대해서 근로감독 강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중이며, 노조측의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내부고발도 지속 증가

* 합동단속기간 : 20주 → 22주, 단속인원 : 340명 → 400명, 근로감독관 565명 증원

- 고용주 처벌 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취업 기회를 원칙적으로 차단,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는 적발 시 시정지시 절차 없이 2~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제9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합법 외국인력 (E-9, H-2비자) 채용 시

- 채용 전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필수

* 허가서 없이 외국인력 현장근로 시 불법고용 처벌

●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동일 적용

건설현장 외국인력 주의사항

●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정부제도 강화 추진

- 외국인력 불법고용 하도급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일정기간 금지
-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

●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 및 확대 추진

- 건설근로자 경력정보 관리 및 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근로차단을 위하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DB와 법무부, 고용부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카드제 적용 의무화 추진
 - * 향후 시행성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 확대 예정

건설현장 외국인력 취업가능비자(단순노무기준)

● 취업가능 비자

- E-9 (비전문취업비자) : 체류기간 3년 (연장시 4년10개월까지 가능)
- H-2 (방문취업비자) : 체류기간 3년 (연장시 4년10개월까지 가능)
- F-2 (거주비자) : 체류기간 3년 또는 5년
- F-5 (영주비자), F-6 (결혼비자)

● 취업불가능 비자

- C-3 (관광비자) : 체류기간 3개월 이내 단수 또는 복수비자
- D-2 (유학비자), D-4 (어학연수비자)
- F-1 (방문동거비자), F-3 (동반비자) 등

● 조건부 취업가능 비자

- F-4 (재외동포비자) : 체류기간 3년
 - * 기능사 이상의 건설관련 합법자격증 (철근, 비계, 형틀목공, 방수 등) 있을 경우
기능공으로 취업가능 (단순노무분야 취업불가능)

감사합니다.